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. 6. 22 선고 2021가단6089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6. 8.

판 결 선 고 2022. 6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1. 15.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소장 해당란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지연

별지